

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

동원 명령을 받는 자		
동원 명령 내용	동원 일시	
	동원 장소	
	동원 대상	
	그 밖의 사항	
동원 사유		
동원 중 행동요령		

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·제51조제1항·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
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직인